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2016. 2. 23.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 과장 노혜원 / 사무관 김신영 (Tel. 044-200-2415)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팀장 김성수 / 사무관 김성환 (Tel. 02-6050-3294)
'16.2.23(화) 회의종료 후 16시 이후 보도		배포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2100-2183)

##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3월말까지 끝낸다” “지방규제지도 대폭 보강 지자체간 경쟁촉진” “지역경제활성화 저해 중앙정부 규제도 손본다”

- 황 총리,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대전·충청 지역에서 처음 개최
- 화장품·바이오 등 수출 성장산업 관련 규제애로 8건 발굴 개선

□ 황교안 국무총리는 2.23(화), 대전 무역회관에서 「제4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불합리한 지방규제해소 방안, 공무원의 월권 행위 근절 등 지방규제 개혁 마무리 전략이 발표됐으며, 대전·충청지역 기업인들의 규제애로도 청취하였다.

\* (참석)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 도지사, 한국무역협회의 대전충남기업 협의회장, 기업인 등

△제1차('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제3차('15.12.3. 부산 상공회의소)

□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 한해 수차례의 특별점검과 감사, 현장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방위적인 지자체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 지자체개혁의 핵심인 규제법령개선과 지방공무원 월권행위 개선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 등 3가지 방식을 동원해 지방규제 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 정부는 우선 지방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년에 3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아직 고쳐지지 않은 천여개 지방규제 정비를 3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
- 정부는 또한 지난 '14년 12월 처음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계기를 제공한 전국규제지도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4개 분야를 보강한다. 이번에 보강되는 4개 분야는 특히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지방규제, 지방세정, 기부채납 요구 등이 포함된다. 지역간 격차가 큰 산업지원 정책도 전국 지자체간 비교대상에 포함된다.
- 정부는 일선 공직자들이 민원에 대해 법령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처방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물론 모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한군데로 모아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 기한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한 것으로 의제하는 인허가간주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제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허가, 승인제로 운용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 공직자가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 등으로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시도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중앙부처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중앙부처까지 확대** 실시한다.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을 부여한다.
- 정부는 한편으로 **지방경제활성화에** 저해되는 중앙정부 규제도 **Bottom Up**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행자부를 통해 3천여건의 지역경제활성화 저해규제 건의를 받아 부처와 개선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방일선의 불합리한 행정을 일소함과 동시에 중앙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혜택이 지방일선에서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총리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또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은 **화장품**과 지역 특화산업의 기반인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관련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 끝으로, 국무조정실은 총리주재 규제개선현장점검회의를 원칙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함으로써 규제개혁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이날 논의된 지역현장 규제애로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현장 규제애로 건의 및 개선내용>

### ① 특구 내 업종제한 완화로 벤처기업 첨단제품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 입주제한업종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으로 투자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대(미래부)-

- (현행) 대덕연구개발특구(II지구)의 입주가능 업종은 총 18개로, 기업이 연구 개발에 성공하여도 18개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생산 및 사업화가 불가
- (개선) 첨단업종 및 융합제품 등 특구육성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근거와 지침\* 등에 따라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 승인 등 절차를 통해 공장설립 승인  
\* 특구법 제34조, 산입법 제6조 제7항, 미래부 훈령(특구 입주심의위원회 규정)

구 분	현 행	개 선
대덕특구 관리기본계획	18개 업종만 입주허용	특구입주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토대로 공장설립승인

⇒ (개선효과) 해당기업 공장등록으로 향후 연간 200억 이상 수출 및 고용활성화

### ② 일시 염모제 등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확대가 됩니다.

-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관련 신제품 개발 등 기대 (식약처)

- (현행) 일시 염모용 색소의 종류가 국내는 56개, 미국 34개, 일본 83개, 유럽 107개로 일본 및 유럽 등 해외제품에 비해 색소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염모제 주 소비층인 젊은 소비자들은 염모제 선택의 폭이 좁아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해 구입  
\* 색소 제한으로 염모제 개발이 어렵고, 판매가 해마다 감소하여 '10~'14년 염모제류 연평균 성장률이 11.8% 감소
- (개선) 색소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 등 색소 전반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색소 범위를 확대  
\*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모발용 화장품 색소 범위	일시적 두발 염모용 색소 국내 56개로 제한적	색소 안전성 연구 결과('16.12월)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색소 범위 확대

⇒ (개선효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며, 관련 신제품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③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과 표기가 좋아집니다.

- 표시사항 적정화로 명확한 정보 제공 및 용기 디자인 향상 (식약처)

- (현행) 화장품 용기에 너무 많은 의무 표시사항과 제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표시사항이 획일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고,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화장품의 특성상 해외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

\* 눌러 쓰는 샴푸 등 마개 없이 펌프로 구성된 제품에 ‘마개를 닫아둘 것’, 막연한 기준인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에는 보관하지 말 것’ 등 제품과 동떨어진 표기 발생

- (개선) 사용시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및 바코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고, QR 코드 시범 도입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화장품 표시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시 주의사항’ 중 ‘공통 사항’은 모든 제품에 표기 의무</li> <li>◦ 바코드 표시사항 규격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시 주의사항 중 공통사항 및 바코드 표시기준 최소화</li> <li>◦ QR코드로 제품의 표시사항 시범 추진</li> </ul>

⇒ (개선효과)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향상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

### ④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지원기준이 구체화됩니다.

- 임상시험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의 승인 기준 마련 (복지부)

- (현행)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특례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은 미비하고, 외국면허 소지자 인정 기준에 첨복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아 외국 의료인의 의료연구개발 목적의 의료행위가 어려움

- (개선)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상·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 승인기준 마련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 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임상시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특례) 임상시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 등이 없음	임상시험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상, 범위, 절차를 구체화
첨복단지 내 의료행위 가능한 외국 의사·치과의사 기준	(제21조 의료법 특례) 첨복단지 내 근무하는 외국의료인의 승인 기준 미비	첨복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의료인에 대한 승인기준 마련

⇒ (개선효과) 첨복의료단지 내 임상시험 보험적용 및 외국의료인 승인 기준 마련으로 첨복의료단지 내 의료연구개발 촉진

### ⑤ 먹는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질환경기사에서 수질환경산업기사로 자격기준 완화 (환경부)

- (현행)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경우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자격소지자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음
  - 자격요건에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소지자가 제외되어 있어 산업기사 사회진출 기회 축소 및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 어려움 호소
- (개선)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수질환경산업기사도 포함
  - \*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먹는샘물 제조업체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 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 (개선효과)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인 인력확보 부담 해소

### ⑥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 규제완화가 허용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공장의 증축 등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국토부)

-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공장은 구역 지정당시 연면적 만큼 증축할 수 있거나, 건폐율 20%까지(단, 특정유해물질 배출 공장은 증축 불가) 증축 가능
- (개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기존 공장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17.12월限) 건폐율 20%에서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새로운 특정대기·수질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경우 제외)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공장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시 건폐율 20%이내 가능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은 위생·안전기준 충족 등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17년말)으로 건폐율을 40%까지 증축 허용

⇒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기존 공장의 증축으로 투자 기대

## ⑦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가 개선됩니다.

- 실손보상 범위의 구체화를 통한 보상의 합리화 (공정위)

-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원사업자 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실손보상”으로 규정
  - 그러나,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아 원사업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일부 미진하게 보상되는 사례가 발생
- (개선) 향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시,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손실범위를 구체화
  -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제도 개선	실손보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아니함	실손보상의 범위 구체화를 통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상이 이루어짐

⇒ (개선효과) 실손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상과 관련된 불합리함 개선

## ⑧ 편리하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로 중소기업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중기청, 국세청)

- (현행)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동일한 자료가 있음에도 중소기업청에 재무제표,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요청시 국세청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확인서 발급
  -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정보 공유 시스템 개편

구 분	현 행	개 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개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중기청에 제출	중기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확인서 발급 가능

⇒ (개선효과)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받고 있는('15년 113,000개 기업)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